나이스[1]의 학생개인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식조사

장순선, 이옥화
충북대학교 컴퓨터교육학과

요 약

학부모들은 나이스 서비스를 통해 자녀에 관한 정보를 온라인으로 직접 열람할 수 있으나, 정보 생성의 주체인 학생은 온라인을 통해 직접 자신에 관한 정보를 열람할 수 없다. 이에 학생들은 온라인으로 자기 정보에 직접 접속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요구를 인권위원회를 통해 제기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나이스에서의 학생이 자기 정보를 직접 접근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교육의 이해 당사자들 간에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 또 방법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관한 인식을 조사 분석하여 정책 결정의 방향제시를 하고자 함이다. 학생의 정보접근 서비스의 이해당사자들은 학생, 교사, 학부모들로 한정하여 이들의 학생의 정보접근 서비스에 관한 인식을 수집 분석하고 또 관련 법령을 검토하였다. 학부모, 학생 및 교사의 인식조사는 2009년 5월과 6월에 각 그룹 당 3,300명씩 온라인 설문을 통해 수집 조사하였다. 분석 결과, 학생의 자기정보 열람서비스에 관하여 학생, 학부모, 교사 순으로 찬성하였고, 정보 입력을 담당해야 하는 교사들도 당초의 우려와 달리 긍정적이었다. 학생정보제공서비스의 운영은 학생정보의 개인정보열람권이 개인의 기본권이므로 모든 학생에게 제공되어야 하지만, 운영상 현실적인 이유로 순차적으로 해야 한다면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에 따라 중고등학교부터 시작하는 것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공 서비스내용에 관해서는 학부모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정보 중 카운셀링 정보를 제외한 정보제공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키워드 : 나이스, 학생정보제공서비스, 학부모서비스, 학교정보공시제도, 개인정보열람권

The Development of Policy toward the Students' Access to Their Own Information on NEIS

Soonsun Jang, Okhwa Lee
Chungbuk University, Dept of Computer Education

ABSTRACT

NEIS (National Education Information SystTem) provides educational information to parents while students are not able to have the direct access to their own academic information. Students filed their request to the National Human Right Agency.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feasibility of students direct access to their own information and how to do it. In detail, online survey was conducted from 3,300 students, teachers and parents who are the stake holders of student information service on NEIS regarding whether they are for it, if so how to do it.

The result indicated that students, parents and teachers are all positive in that order. It is unexpected that teachers who need to input and are responsible for the accuracy and reliability for student information are also for it. Although the human right law suggests all students have the right to direct access to their own information, the order of operation can be from secondary school level if the operation can not be done all at the same time. The range of information provided through this service is in principle the same as what parents can access except the counseling information.

Keywords : NEIS, Student Information Service, School Information Publish System, Parent Service

---

본 연구는 2009년도 충북대학교 학술연구지원사업의 연구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본 연구는 2009년도 교육과학기술부의 정책연구로 수행된 자료를 사용하였음.

1) NEIS (National Education Information System) :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논문투고 : 2010-05-11
논문심사 : 2010-06-07
심사완료 : 2010-06-08

1. 서 론

나이스는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및 교육인적자원부와 학교를 연결하여 선진교육행정 정보서비스를 위해 2002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나이스는 교육행정 업무를 정보화하여 교육행정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고, 대국민 서비스의 질을 높이며, 교원의 업무를 경감하는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7]. 나이스를 통해 교육청과 행정 업무가 원활히 연결되고, 초·중·고등학교의 교육행정 정보화가 대학까지 연계되어 나이스 시스템은 교육현장의 일하는 방식을 상당히 변화시키고 있으며, 지역 간 및 업무 분야 간 정보화 격차 해소 등 다양한 측면에서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어 진다[4][3].

특히 최근 들어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학교정보를 일반에 공개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이는 정보공시제 및 학부모정보서비스제 등과 같이 학교 정보를 일반에 공개하여 학부모나 학생들이 교육 정책에 적극적인 참여를 할 수 있게 권장하는 정책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006년 3월부터 6개월에 걸쳐 전국 44개 나이스 시범학교의 학부모 2,842명을 대상으로 <내 자녀 바로 알기> 시범 서비스를 시행한 바 있으며, 그 결과를 반영하여 2006년 9월부터 전국의 학부모에게 본 서비스가 확대·시행되었다[9]. 현재 학부모서비스는 자기 자녀의 학교생활기록 등 38종의 학생정보를 학부모에게 제공하여, 학부모와 학생, 교사가 함께 참여하여 학교교육과 가정교육을 연계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14].

그러나, 학부모서비스를 통해 학부모는 자녀의 정보에 대해 열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정보의 주체인 학생이 직접 접속하여 자신에 관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에 대해 학생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내었고, 국가인권위원회는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게 「재학생이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 수집된 본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기술적 보안체계를 확립하고, 서버 등 물적 기반 시스템을 확대하는 등의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하였다[14].

현재 입학사정관제의 확대에 따라 학생들이 대학입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정보를 활용하고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할 필요가 생겼다. 그러나 정보의 주체자인 학생은 교사와 학부모가 온라인으로 학생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것과 달리 자기주도적으로 자신의 학습활동 이력관리를 하기 어렵다.

이러한 상황으로 판단해 보건데, 학생 스스로 자신의 정보를 온라인으로 접근해 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서비스의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학생정보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실제 정보를 입력하고 관리해야 하는 교사의 입장에서는 그리 반길만한 일만은 아닐 수도 있다. 교사들이 학생들의 정보 공개로 인하여 학생과 학부모와의 관계에 어떤 변화가 올 것인지에 대해 우려하여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하기 꺼리거나 혹은 업무 부담을 크게 느낄 가능성도 있다. 교사들의 협조 없이 학생정보 서비스는 이루어지기 어렵다. 이미 과도한 행정 업무를 호소하는 교사들에게 학생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정보의 입력과 관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다. 교사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나, 이들이 나이스 도입 초기에 보여주었던 거부 여론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보건데, 교사들의 인식을 잘 설펴서 이들이 생각하는 바를 나이스 구축 시 잘 반영할 필요가 있다.

또 학생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법적인 이슈가 생길 가능성도 있다. 학생의 성적을 포함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의 범주에서 정보당사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 개인정보 보호차원에서 개인정보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를 사용하게 된다. 그러나 공인인증서는 성인대상의 제도인데, 학생들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학생정보제공서비스 이용 시, 개인정보 보호를 하면서 개인정보에 접근하기 위해 어떤 법적인 요건이 필요한지 조사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나이스에서 학생이 직접 자기 정보에 접근을 하기 위한 학생정보제공서비스에 대한 방안 연구이다. 이를 위해 학생, 교사, 학부모를 대상으로 다음의 연구 내용을 분석하고자 한다. 첫째, 학생들이 자신의 정보에 직접 접근하는 학생정보제공서비스를 찬성하는지, 둘째, 학생정보제공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어느 학교 급부터 제공되어야 하는지 서비스 대상을 분석하고, 셋째, 제공되는 학

생정보는 어떠한 내용을 포함해야하는지, 넷째, 이를 위해 관련되는 법령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학생정보제공서비스의 이해당사자인 학생, 교사, 학부모들의 인식을 조사 분석하고 관련 법령을 분석하였다. 결론에서는 학생정보제공서비스에 따른 교육적 활용에 대해 제언을 하고자 한다.

2. 학생정보제공 관련 제도

2.1 학교정보공시제도

학교정보공시제도는 학교 전반의 주요정보를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공개하는 제도로 학교교육의 정확한 현상 파악을 통해 공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07년부터 추진된 시행령 제정을,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정책환경 변화에 따라 단위학교별 공시정보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기존 시행령(안)을 수정하여, '08년 5월부터 시행령 제정을 재추진하여 공청회(8.1.) 및 대국민 여론조사('08.8.) 등을 실시한 후 시행령(안) 확정(9.12.)하고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을 제정 공포(11.17.)하였다. 12월 1일부터는 초 중등학교의 홈페이지와 학교정보공시 포털사이트인 "학교알리미"를 통해 대국민 서비스를 개시하였다. 향후 공시정보에 대한 신뢰도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과 함께 대국민 만족도 조사를 통해 국민들이 알고 싶어 하는 공시항목을 추가 발굴하여 학교정보공시제도가 공교육의 질을 한 단계 높이는 토대가 되도록 보완·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22].

유대균[11]은 학교정보공시제도가 시행되면, 학생 및 학부모에게 교육수요자로서의 알 권리가 충족되고 학교에 대한 관심과 외부 모니터링 기능이 강화되고 정확한 정보에 근거한 교육의 질 측정이 가능해 진다고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학교뿐만 아니라 정보 주체의 알권리가 확보되어야한다는 의식이 점차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미 '내 자녀 바로알기' 나이스 학부모서비스가 운영되고 있으나 학생에게 학생정보제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이 적극 모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 진다.

2.2 학부모 서비스의 교육적 효과 분석

학부모서비스는 학생정보를 학부모들에게 지공하는 서비스로 2006년 9월 1일부터 시작하였으며 2007년 9월에는 서비스 영역을 6종에서 26종으로 확대하여 추진하였으며 현재 38종의 서비스 제공 중이다. 학부모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크게 4가지로 학교정보, 학생정보, 학부모상담관리와 자녀교육활용정보로 나누어진다<표 1>.

<표 1> 학부모서비스 주요 내용[8]

<2009년 서비스 항목>	
학교정보 (9종)	◦ 학교기본정보(학급 수, 학생 수, 교원 수 등 추가) ◦ 교육과정 – 과목 및 담당교사 – 반별시간표 – 주간학습(초등) ◦ 학사일정 – 연간학사일정 – 월간학사일정 ◦ 급식식단표 – 월간식단 – 주간식단 ◦ 가정통신문(학부모 회신 기능 추가)
학생정보 (21종)	◦ 학교생활기록부 ◦ 학습안내 – 교외학습자료 – 교내학습자료 – 개인별 맞춤형 학습자료(중,고) ◦ 학교생활 – 월출결통계 – 출결사항 – 자치활동조회 – 적응활동조회 – 행사활동조회 – 계발활동조회

<2009년 서비스 항목>	
	– 봉사활동조회 – 치료교육활동조회(특) ◦ 성적 – 고사별 정· 오답표(중,고) – 성적통지표(중,고,특) – 표준점수분석표(중,고,특) – 성적변화표(중,고,특) – 학업성취도(초,중,고) – 성적(초,특), ◦ 진로/상담자료 – 진로상담을 위한 도움자료 – 심리검사 결과(직업적성검사, 직업흥미검사, 진로성숙도검사, 직업가치관 검사 등) ◦ 건강기록부
학부모 상담 관리 (3종)	◦ 상담공지사항 ◦ 선생님과의 상담 ◦ 상담 내역 조회
자녀 교육 활용 정보 (5종)	◦ 학업지도 – 내 자녀 학업지도, 학업지도관련 사이트 안내 등 ◦ 인성지도 – 내 자녀 이해하기, 사이버공간 이용방법, 인성지도 상담 사이트 안내 등 ◦ 진학지도 – 각 지역별 학교정보, 진학정보센터 등 관련 사이트 안내 ◦ 진로지도 – 진로지도의 이해, 자녀의 진로 특성별 직업 찾기, 자녀 취업상담 관련 사이트 안내 ◦ 특수아지도 – 영재아지도, 장애아지도, 학습부진아 지도 관련 사이트 안내

박상철[9]의 연구에서는 학부모 서비스의 교육적 효과로 다음을 제시하였다. 첫째, 학교와 교사에 대한 학부모의 불신이 해소되고 둘째, 자녀의 학교생활에 대한 학부모의 관심과 지원이 제고되며 셋째, 학생의 일탈 행동이 예방된다고 보고 있다. 또한 교육의 주체인 학부모, 학생, 교사뿐만 아니라 학교장의 입장에서도 그 효과를 살펴본 결과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기대효과를 나타내고 있었다. 이로써 학생정보서비스 제공 시에도 학생, 학부모, 교사에게 교육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2.3 해외 사례

해외 사례를 통해 학생정보제공 서비스에 관한 방향제시를 찾아보고자 하였다. 연구가 진행되던 2009년도 5월과 6월에 전국 단위로 학생정보제공서비스를 실시하는 해외 사례를 수집하였다. 각 나라에서 학생정보제공 여부를 하는지 확인하는 일이 매우 어려워, 교육정보화가 앞선 미국, 유럽, 아시아 국가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학교 단위나 지역별로 일부 학생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나라들이 있으나 국가 단위의 학생정보제공서비스를 수행하고 있는 나라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초·중·고등학교 교육에 관하여 미국과 영국계열의 나라들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으로 다루고 있어 전국적인 시스템이 있는 나라는 많지 않았다. 미국의 경우 주마다 학교마다 학생정보제공에 환한 정책이 매우 다양하고 영국의 경우 아직 서비스가 안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나마 가장 나이스에서 참고할 만한 국가단위의 학생정보제공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는 핀란드이고, 또 싱가포르도 근접한 서비스를 보여주고 있었다.

싱가포르의 공립학교에서는 Cockpit라는 시스템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으나 전국의 모든 학교들이 다 이 제도에 참여하고 있지는 않았다. 일부 공립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자신의 정보 열람권을 주장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열람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도 대학 입시에 관련되는 내용으로 한정하고 있었다. 싱가포르에서는 고등학교가 평준화되어 있지 않고 입시를 통해 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되어 있어서 학생들은 학교 당국의 정책에 매우 순응적이고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내지 않는다. 사립학교의 경우 학교장의 의지로 Cockpit과 같은 시스템을 사용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 한국에서와 달리 전국적인 교육행정교육정보시스템 사용의 구속력이 매우 약하다.

그에 반해 모든 개인 국민의 수입과 세금이 일반에게 공개되는 핀란드에서는 정부가 제공한 WILMA라는 시스템을 통해 학생들이 직접 자신의 성적을 볼 수 있게 되어 있었다. 핀란드는 사립학교가 거의 없어 WILMA가 모든 학교에서 사용되고 있으니, 이를 아는 학부모는 매우 적었다. 재미있는 것은 핀란드에서 개인 정보에 관한 권리를 매우 존중하고 있어 학생들은 16세가 되면 자신의 정보결정권을 스스로 결정하도록 인정하고 있었다. 따라서 모든 학생들은 16세 이상이 되면 자신에 관한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정보에 학부모가 접근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16세 이상의 학생을 둔 부모는 학생이 허락해야 자신의 자식의 정보를 볼 수 있다. 이는 새로운 이슈를 낳고 있다. 즉 학부모들은 학생의 활동 및 학비 지원 등 학생에 관한 상당부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에 관한 학생 정보 접근 권한을 학생에게 받아야만 하기 때문이다. 아직 외국에서 학생정보제공서비스를 전국적인 서비스로 보편화하고 있지 않아 한국이 시도하는 학생정보제공서비스는 다른 나라에 선례가 될 것이다.

3. 연구방법

3.1 연구 대상

본 연구를 위하여 학생, 교사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조사를 하였다. 설문 대상으로 학생, 교사, 학부모로 선정한 이유는 이들은 교육의 주체이기도 하며, 학교정보공시제도와 학생정보제공서비스에 있어 직접 관련이 있는 이해당사자이기 때문이다.

전국 초·중·고등학교 학생 5명, 교사 5명, 학부모 5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하여 설문지를 개발한 후, 2009년 3월부터 4월까지 전국 초·중·고등학교 학생 119명, 교사 50명, 학부모 38명을 대상으로 각 설문지에 대한 파일럿 테스트를 하였다. 설문지의 주체별 신뢰도 Cronbach's alpha 계수는 학생 0.8, 교사 0.6, 학부모 0.8이었다.

2009년 5월 8일부터 2009년 6월 30일까지 1차 온라인 설문에 전국 초·중·고등학교 학생 3,300명, 교사 3,300명, 학부모 3,300명이 참여하였다. 설문 참여 학생들은 전국에서 성별, 학교급, 성적별로 고르게 선정되었다. 구성을 살펴보면, 성별은 남학생이 42%, 여학생이 58%이고, 학교급은 초등학교 21%, 중학교 27%, 고등학교 52%, 특수학교 2%로 고등학교에서 많이 참여하였고, 지역은 경기도 36%, 경상북도 16%, 서울시 12% 등 경기 서울 지역이 많았으나 인구비율을 고려하면 전국적으로 고른 참여를 보였다. 학생의 성적도 상위 10%이내 18%, 25% 이내 17%, 50% 이내 21% 등 고른 분포를 보였다.

설문 참여 교사들은 성별, 소속기관, 연령, 지역, 교사지위가 고른 분포를 보였다. 구성을 살펴보면, 성별은 남 53%, 여 47%이고 소속기관은 초등학교 41%, 중학교 27%, 고등학교 31%로 초등학교 교사가 많았고, 연령은 40대가 36%, 50대 이상이 27%, 30대가 24%, 20대가 14% 등 고른 분포였고, 근무지역도 경기도 20%, 서울시 12%, 부산시 8%, 인천시 8% 등 지역 역시 비교적 고르게 분포하였다. 교사의 지위는 담임교사 50%, 부장교사 30%, 경영관리자 10% 등이었다.

설문 참여 학부모들은 남자보다 여자가 더 많았고 자녀의 학교급은 중학교가 많았으며 연령은 40대가 많았으나 지역은 서울, 경기지역이 많았고 학력은 대학졸업 이상이 많았다. 구성으로는 남 27%, 여 73%로 나타났으며, 자녀의 학교급은 초등학교 27%, 중학교 44%, 고등학교 29%이며, 연령은 40대가 61%, 30대가 32% 등이었다. 자녀의 학교 소재 지역은 경기도 25%, 서울시 21%, 경상북도 8%, 부산시, 인천시, 경상남도가 6% 등이었다. 학력은 대학졸업 이상은 40%, 전문대졸 19%, 고졸 38%였다.

3.2 측정도구

본 연구를 위해 사용된 측정도구는 학생정보제공서비스에 관한 인식 조사 설문검사지이며, 설문의 주요 문항 구조는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설문 주요 문항 구조도

설문지 항목 내용			
배경정보		학생	성별, 학교급, 학년, 지역, 성적
		교사	연령, 성별, 소속기관, 경력, 지위, 지위
		학부모	연령, 성별, 자녀의 학교급, 학년, 지역, 학력
연구내용	정보공개여부	학생	나는 교사나 부모님을 통해 온라인으로 내 정보를 볼 수 있지만, 나 스스로 인터넷으로 내 정보를 열람할 수 있어야 한다.
		교사	나이스에서 학생이 학부모를 통해 자기정보를 열람할 수 있어도 학생 스스로 정보를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학부모	학생이 인터넷에서 자기 정보를 혼자서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시작학교급	학생	언제부터 자기 정보를 온라인을 통해서 스스로 열람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교사	현재 소속한 학교급의 학생들에게 스스로 온라인으로 학생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하는 자기정보열람권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학부모	학생이 자기 정보를 언제부터 직접 열람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보범위	학생	온라인을 통해 나에 대해 어떤 내용을 알고 싶은지 모두 고르시오
		교사	나이스에서 학생에게 제공 시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서비스 항목을 모두 고르시오.
		학부모	학생이 자기 정보를 온라인으로 직접 열람할 수 있을 때 필요한 정보라고 생각되는 항목을 모두 고르시오

3.3 연구 분석 방법

본 연구의 설문 결과 분석을 위하여 사용된 통계 분석방법으로는 빈도분석, 교차분석, t 검정 등을 실시하였다. 통계분석을 위해 SPSS win ver 12.0이 사용되었다.

4. 연구결과

4.1 학생정보서비스 제공 여부

학생정보제공서비스에서 학생에게 학생정보제공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여부를 묻는 설문에서 학생의 경우, 5점 척도로 볼 때 4.1로 높았으며, 중학생이 4.2로 가장 더 높았다. 이는 학부모와 교사와 같이 학생들도 자기정보에 관한 열람을 많이 원하고 있음을 나타낸다(그림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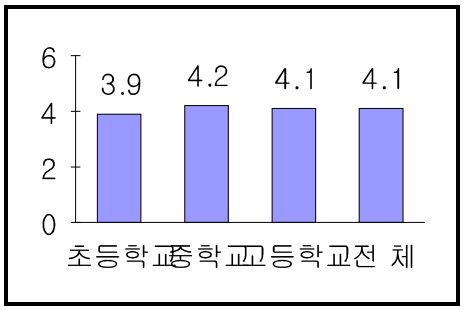

(그림 1) 학교급별 학생의 자기정보열람에 관한 학생의 찬성 정도(5점 척도)

교사의 경우는 전체의 46%가 학생에게 학생정보 제공서비스 제공에 찬성하였고, 예상대로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찬성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그림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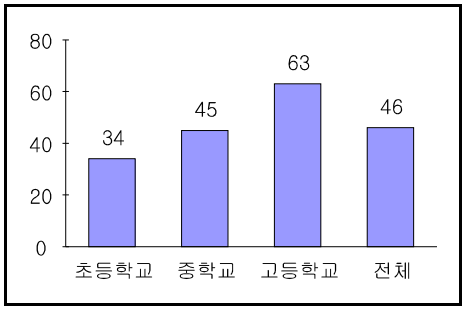

(그림 2) 학교급별 학생의 자기정보열람에 관한 교사의 찬성 정도(%)

학생정보 제공과 관련된 교사의 전반적인 의식에 대해 살펴본 결과는 <표 3>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교사의 인식이 부정적일 것이라는 우려와는 달리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교사들이 학생정보제공으로 인하여 정보입력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업무량이 늘어나겠지만, 정확한 정보를 입력하는데 학생의 영향을 거의 받게 되지 않을 것이고, 객관성을 기하려고 노력할 것이며, 학생과의 의사소통이 전반적으로 잘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는 등 학생과의 관계변화뿐만 아니라 나이스에 대한 의식들도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표 3> 학생정보 제공과 관련된 교사의 반응

설문 내용	5 점 척도
1) 나이스에서 학생이 학부모를 통해 자기정보를 열람할 수 있어도 학생 스스로 정보를 보는 것이 타당하다.	4.1
2) 나는 학생 정보제공 시 학생정보 기록에 더욱 객관성을 기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4.4
3) 학생이 학기 중에 기록을 보고 이의를 제기할까 염려하여 객관적으로 기록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2.3
4) 학생과의 관계가 사무적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	2.7
5) 학생들 간에 서로 정보를 교환하여 교사가 기록을 하는데 힘들게 할 것이다.	2.9
6) 교사가 학생에 관한 기록을 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쓰게 될 것이다.	4.0
7) 나는 다른 교사와 비교할 때 나이스를 업무적으로 더 자주 활용하고 있다.	3.9
8) 나이스는 개인정보 보호정책 및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시스템이다.	4.1
9) 나이스에서 학생의 인증을 교사가 하게 되어 교사의 업무량이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3.7
10) 학생은 학교의 공통 목표에 대한 인식이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3.3
11) 학생과 교사 간 의사소통이 전반적으로 잘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3.3
12) 학생의 나이스 인증 방법도 학부모와 같은 방식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3.6

학부모의 경우는 5점 척도로 3.7이었으며, 학생의 4.1 보다는 조금 낮았다. 교사와 마찬가지로 고등학교로 올라갈수록 학생정보제공에 대한 긍정적인 경향을 보였다(그림 3). 이는 학부모들이 대학입시에 가까울수록 학생정보제공서비스가 유용할 것이라 믿는 것으로 보인다.

고등학교 학생의 학부모나 교사들이 본 서비스를 가장 많이 찬성하는 반면 학생들의 경우 근소한 차이이기는 하나 중학교 학생이 가장 찬성비율이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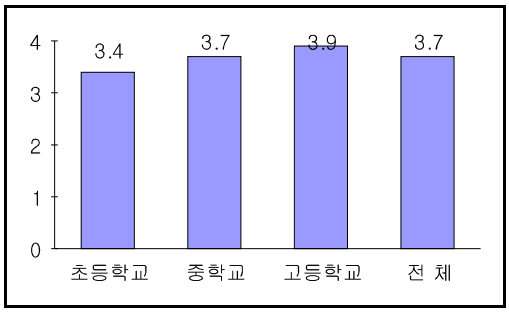

(그림 3) 학교급별 학생의 자기정보열람에 관한 학부모의 찬성 정도(5점 척도)

4.2 학생정보서비스 시작 학교급

학생에게 학생정보제공서비스를 언제부터 제공하는지를 묻는 설문에서 학생은 중학교가 47%로 가장 많이 원하고 있었다(그림 4). 즉 중학교 이상부터 학생정보제공 서비스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학생이 가장 많았고, 고등학교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학생이 18%, 초등학교부터 실시해야 한다고 하는, 즉 모든 학교급에서 다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학생이 27%가 되었다. 이런 서비스를 불필요하게 생각하는 수는 8%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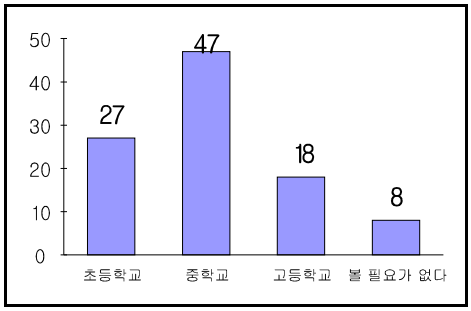

(그림 4) 학생이 원하는 자기정보 열람 시작 학교급(%)

학부모도 49%가 중학교부터 공개를 원하고 있어 학생과 같은 결과를 보였다(그림 5). 그러나 다음 순위 학교급을 살펴보면 학생은 초등학교이고 학부모는 고등학교이다. 학생은 학부모나 교사보다 더 빨리 학생정보제공서비스를 제공받기를 원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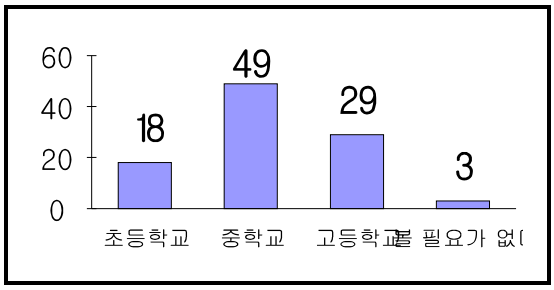

(그림 5) 학부모가 원하는 학생정보 제공 시작 학교급(%)

4.3 학생정보서비스 정보 범위

학생들은 학생정보서비스 제공 시 열람하기를 원하는 정보를 여러 개 선택하게 한 결과, 학생의 77%가 성적통지표 , 71%가 성적변화표로 성적에 관한 정보를 원하였다(그림 6). 이는 <표 4>과 같이 학교급에 따라서도 같은 결과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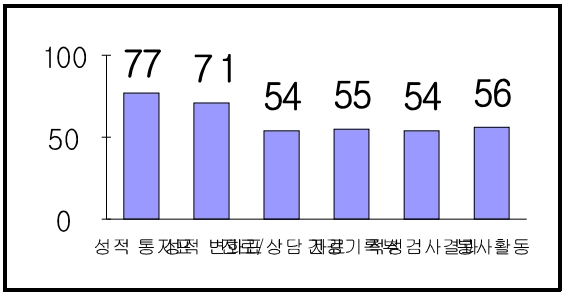

(그림 6) 학생이 제공되기를 원하는 정보서비스의 범주(%)

이와 유사한 결과로, 우리나라의 교육정보공개 현실 조사[11]에서도 학교정보공시제 시행 이후, 많이 열람할 것 같은 내용으로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60.7%)를 가장 많이 선택하였다.

<표 4> 학교급별 학생이 제공되기를 원하는 정보서비스의 범주

학교급	학생이 제공되기 원하는 정보서비스의 범주
초등학교	성적 통지표 > 성적 변화표 > 건강기록부 > 적성검사결과
중학교	성적 통지표 > 성적 변화표 > 적성검사결과
고등학교	성적 통지표 > 성적 변화표 > 진로/상담 자료 > 적성검사결과
기 타	성적 통지표 > 학교의 공지 사항 /가정통신문 보기

4.4 학생정보서비스 제공 관련 법령 검토

학생에게 학생정보제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법적으로 정당한 것인지 검토하기 위하여 관련되는 법령을 조사 분석하고 변호사의 법적 자문을 구하였다.

학생에게 학생정보제공서비스에 관한 법적 근거로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들 수 있다. 이것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10조 제1문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 및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의하여 보장되는 권리로서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학생정보의 주체는 학생 본인이기 때문에 학생에게 학생정보제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법적으로도 인정하는 권리이다. 즉 학생이 자신에 관한 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헌법재판소 2005. 5. 26. 선고 99 헌마513 결정)를 갖는다는 것이다.

'교육기본법'과 '교육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을 분석한 결과, '교육기본법' 제23조의2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의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3조의3은 학교생활기록 등의 학생정보는 교육적 목적으로 수집·처리·이용 및 관리되어야 하고(제1항) 부모 등 보호자는 자녀 등 피보호자에 대한 제1항의 학생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학생 본인에 관하여는 같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헌법상 인정되는 기본권이므로 당연히 인정되어야 할 것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따라야 할 것이다[14].

교육정보시스템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장 방법을 살펴보면, 학생은 정보주체로서 원칙적으로 교육정보시스템상의 자기정보를 열람, 정정, 삭제 등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이러한 권리를 행사하는 방법으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

률'상의 열람청구권 등을 행사하면 될 것이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한 내용인 자기 정보파일에의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한다는 의미에서는 서면청구 등의 방법보다는 본인이 직접 정보파일에 접근하여 열람하고 정정, 삭제 등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다만 교육정보시스템상의 학생정보는 교육적 목적으로 수집, 처리, 이용 및 관리되어야 하므로 학생의 정보접근권을 보장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목적을 비교형량하여 학생의 정보접근범위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2007년 제정되고 2008년 개정된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은 교육관련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의무와 공개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학술 및 정책연구를 진흥함과 아울러 학교교육에 대한 참여와 교육행정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다(제1조)는 목적으로 학교정보공시제도의 토대가 되고 있다.

위의 법령들에서 학생은 헌법이 보장되는 '인간'에 해당하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서 밝히는 생존하는 '개인'이자,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서 대상으로 하는 '국민'인 것이다. 정보공개의 대상에 있어 나이에 따라 그 권리를 제한하거나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이와 같이, 관련 법령의 조사 분석과 변호사의 법적 자문을 통해 볼 때, 학생에게 학생정보제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법적으로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연구 문제 1에서의 이해 당사자들의 인식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이해당사자인 학생, 교사, 학부모 모두 학생에게 나이스를 통해 학생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찬성하였다. 정보를 제공받는 학생이나 학부모의 경우 이를 찬성하는 것이 쉽게 이해가 되지만, 학생정보를 입력하고 관리를 책임져야하는 업무 부담을 갖는 교사들이 이 제도에 찬성을 하는 것은 고무적이다.

학생 스스로 자기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는 사실은 학생을 교육활동에 있어 적극적 참여자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활동을 교육서비스가 공급자 위주의 모델에서 수요자 중심모델도 포함하게 되는 단초로 볼 수 있다. 공급자 중심모델에서는 학생들이 주어지는 교육 서비스를 수용하거나 자신들의 견해를 밝히는 소극적 참여에 그치는데 반해 수요자 중심모델에서는 정보의 생산과 소비 과정의 주체로서 적극적 참여자의 역할을 함으로써 참여의 효능감을 더욱 높일 수 있다고 보여진다[12]. 학생들도 학생정보서비스를 제공받아 자신의 교육 이력 관리나 대학입시의 입학사정관제에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학생 누구나 자신의 정보를 볼 수 있는 권리가 있어 모든 학생들에게 학생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법정신이다. 개인정보 공개 관련법에 의하면 개인의 자기정보열람권은 나이나 학교급의 제한 없이 누구에게나 제공되어야 한다. 따라서 모든 학생에게 자신의 정보를 볼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러나 연구결과, 학생정보서비스를 연차적으로 제공해야 한다면 시작학교급에 관하여 학생과 학부모들이 중학교부터 요구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시스템의 준비, 시스템의 운영을 위해 단계적이고 점차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경우 중학교이상의 학교급부터 시작하는 것이 현실적인 해결방안으로 보인다.

셋째, 학생정보서비스 정보 범위로서 선호하는 내용은 기대했던 것처럼 성적통지표, 성적변화표, 봉사활동, 건강기록부 등의 순이었다. 학생들이 가장 보고 싶어 하는 정보는 성적관련 정보이다. 이는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학생들은 자신의 성적을 직접 혼자 볼 수 있다는 것에 매우 매력을 느낀다. 학생들은 학부모 서비스를 통해 자신의 성적을 볼 수 있으나, 학생들은 이에 매우 큰 거부감을 보였다. 심지어 학생들은 이것에 못 마땅하여 학부모에게 나이스를 통해 학생 정보를 볼 수 있다는 사실을 학부모들에게 알리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 심층면담에서 나타났다.

넷째, 미성년자인 학생들이 개인정보 열람을 할 수 있게 교육적 인프라 투자를 해야 할 것이다. 교

육법 관련 법령에서는 학생이 자기정보의 주체이므로 학생정보서비스의 제공이 보장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학생들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가질 수 있게 되어 향후 '개인정보보호 및 개인정보결정권',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이 강해져가는 추세이므로 정보주체인 학생의 정보에 관한 권리 요구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결과의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으로는 첫째, 학생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한 타당성 확보이다. 이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내용을 수용 여부 및 범위 판단 근거로 활용하고, 학생정보서비스의 이해당사자인 교사, 학생, 학부모 모두가 본 서비스에 관한 요구가 높으므로 이는 서비스 구축의 근거로 활용 가능하다.

둘째, 학생의 자기정보 접근성 확대를 위한 이론적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최근 개인정보보호의 개념이 소극적 프라이버시권에서 적극적 프라이버시권의 확대 추세이나 정보의 공개 추세도 동시에 발전하고 있으며 정보제공 범위와 정보인권의 조화점을 탐색해봄으로써 학생정보 제공의 이론적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셋째, 학생에게 대학입시사정관제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줄 수 있다. 대학입시가 성적위주의 획일적 선발 방식에서 벗어나 학생의 잠재력, 대학의 설립이념 및 모집단위 특성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한 선발 방식으로 개편되고 있어 자기 스스로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이스의 학생정보제공서비스로 학생 스스로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게 도와줌으로써 성적과 학교활동 등에 관한 학생정보와 더불어 학생이 원하는 대학의 입학 자료를 입력하여 분석한다면 진학지도에 도움이 될 것이다.

나이스는 2011년부터 차세대 나이스로 탈바꿈하게 된다. 새로운 나이스 구축 시 이와 같은 학생정보제공서비스의 요구를 반영하여 교사, 학생 및 학부모의 수요에 부응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1] 고영미, 조부경, 이옥화 (2007), 유치원 교육행정정보화 현황 및 교원의 인식 분석, 한국어린이미디어학회, 6-1, 125-150.

[2]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정보분석과 (2008), 2009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양식 및 지침서. 교육과학기술부 지침서 1657

[3] 교육인적자원부 (2006),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효율적 활용 방안 : 일반계고 시범학교 중간 보고회자료, 교육인적자원부 2006년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운영 보고서.

[4] 교육인적자원부 (2006), e-교육행정서비스 혁신대회 우수 사례집,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연구보고서.

[5] 김미영 (2007), 대학교 혼합학습 환경에서 학습참여도, 학업성취도, 학습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e-러닝 학습전략, 한국컴퓨터교육학회, 10-4, 93-102.

[6] 김미영, 최완식, 이규녀 (2008), 대학 e-러닝 환경에서 수업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학습자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기술교육학회, 8-1, 221-236.

[7] 김준한 (2005), NEIS 시스템이 교육행정에 미치는 영향성 평가 연구, 한국교육학술정보원, CR 2005-17.

[8] 대구광역시교육청 (2008). 개인정보보호 업무편람,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정보화과 업무편람.

[9] 박상철 (2006), <내 자녀 바로 알기> 학부모서비스의 교육적 효과 분석, 교육인적자원부, 2006-이슈-16.

[10] 서울특별시교육청 (2008), 2008년도 '내 자녀 바로 알기' 나이스 학부모서비스 추진 분석 결과 및 활성화 계획(안), 행정관리담당관-17949.

[11] 유대균 (2009), 학교정보공시제도의 이해, 교육과학기술부, 2009년 5월 21일 제주도 교육청 연수자료.

[12] 윤성이, 장우영 (2007), 한국의 온라인 정치

참여 특성, 정보화정책, 14-4, 82-101.
[13] 이옥화 (2008), KISDI 전자정부 성과평가 모델에 기반한 교직원 그룹 및 학부모의 NEIS 활용 인식 분석, 한국교원교육연구, 25-2, 81-104.
[14] 이옥화, 김종배, 기회성 (2009), 나이스에 탑재된 재학생의 자기정보 열람 서비스 제공 방안, 교육과학기술부 2009년 정책연구개발사업 보고서.
[15] 이옥화, 조부경, 고영미 (2006), 유치원 교육행정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초 연구, 교육인적자원부 유아교육지원과 정책연구, 유아교육지원-2006-위탁-1.
[16] 이옥화, 조부경, 고영미, 안경진, 이준희 (2007) 유치원 교육행정 정보시스템 구축 전략 연구, 한국어린이미디어학회, 6-2, 149-178.
[17] 정보화전략실 개인정보보호과 (2008), 「개인정보보호법」 제정방향 및 주요내용, 행정안전부 정책보고.
[18] 한국정보보호진흥원 (2007), 주민번호 대체수단 서비스 개선 방안 연구, KISA-WP-2007-030.
[19] 한국정보사회진흥원 (2007), 전자정부서비스 사용자인증 및 권한관리 레벨화 방안 연구, NIA-Ⅳ-RER-07041.
[20] 교육과학기술부 (2006), 나이스에 대한 이해 자료, http://neis.go.kr/
[21] 교육과학기술부 (2006), '내 자녀 바로 알기' 학부모 서비스, http://neis.go.kr/
[22] 교육과학기술부 (2009), 학교정보공시제도 안내, http://www.mest.go.kr/me_kor/intro/general/1/1/policy.jsp?ucd=E01&nno=27
[23] 서울시교육청 (2009), 학부모서비스 소개. http://neis.sen.go.kr/mw/hakbumo.html

저자소개

장순선

2007년, 충북대학교 교육학 석사 (정보컴퓨터 교육 전공)
2010년, 충북대학교 컴퓨터교육학과 박사과정 수료
2005년 ~ 현재, 영동노인복지회관 강사
2007년 ~ 현재, 영동대학교 강사
2009년 ~ 현재, 영동여성새로일하기센터 강사
관심분야 : 교육정보화, e-러닝, 컴퓨터윤리
e-mail : likesun0610@hanmail.net

이옥화

1981년 ~ 1986년, Univ. of Wisconsin-Madison 컴퓨터교육/교육공학 전공 (M.S., Ph.D.)
1996년 ~ 현재, 충북대학교 컴퓨터교육학과 교수
현재, 대통령 직속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위원
2008년 ~ 현재, 세계화교육재단 부회장
현재, 한국교육정보미디어학회 학회장
관심분야 : 교육정보화, e-러닝, 미래교육시스템
e-mail : ohlee@cbnu.ac.kr